

의안번호	제 10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8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 (안 제3조·제4조)
- 공급업체의 공모·선정 및 공급비용의 지급 (안 제5조·제6조)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근거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0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안 제21조·제22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관계법령 발체 : 불 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실·국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홍보·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도내 시·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3. 도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도가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도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도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의 지급)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 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 회의로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은 심의 안건 및 서면 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 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및 기금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충청북도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부금을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고향사랑기금 및 답례품선정 위원 수당 등 지급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제공

3. 관련조문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 답례품의 지급(안 제6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1조)
- 기부금 운용 비용의 특례 (안 부칙 제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2년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기준 적용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기부금 추계분석 -

나. 추계 결과

- 답례품선정위원회 출석수당('23년) : 1,600천 원(8명x100천원x2회)
- 답례품 공급비용 지급('23년) : 430,500천원(14.35억원×30%)
- 기금운용위원 출석수당('23년) : 1,400천 원(7명x100천원x2회)
- ※ '23년 충청북도 기부 예상액 : 14.3억(출향인 14,000여명×10만원 기부)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 기금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봉사팀장 오세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33,500	476,400	523,800	576,000	633,300	2,643,000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안 제6조)답례품의 지급	430,500	473,400	520,800	573,000	630,300	2,628,000
(안 제3조)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1,435,000	1,578,000	1,736,000	1,910,000	2,101,000	8,76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기금 추계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한 예측치로 실제는 달라질 수 있음
 - 기금설치(22년 상반기) 후에는 답례품 지급을 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할 계획임